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207
----------	------

발의연월일 : 2017. 6. 5.

발의자 : 황주홍 · 박준영 · 위성곤
이찬열 · 김삼화 · 김광수
김중로 · 주승용 · 이동섭
김동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항운영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어항운영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수산업의 기반시설인 어항은 어업의 생산 공간인 어장과 어촌주민의 생활공간인 어촌을 연계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 어항운영전산망은 어항통계와 민원사무처리 위주로만 운영되고 있어 종합적인 어항정책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와 정책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통합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 어항운영전산망을 어항과 관련된 통계자료와 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된 정보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항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대 구축하여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47조).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어항운영전산망”이란 어항운영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 등을”을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이란 어항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어항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 등을”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중 “어항운영전산망”을 “어항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어항운영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어항운영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어항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어항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어항운영전산망의”를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로, “어항운영전산망을”을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어항운영전산망의”를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6. (생 략)</p> <p>7. “<u>어항운영전산망</u>”이란 어항 운영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전자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p> <p>8. (생 략)</p> <p>제47조(<u>어항운영전산망</u>의 구축·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u>어항 운영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처리</u>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u>어항운영전산망</u>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지정권자, 어항관리청 또는 <u>어항운영전산망</u>의 이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어항운영전산망</u>을 이용하여 이</p>	<p>제2조(정의) -----</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어항통합정보시스템</u>”이란 <u>어항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어항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 등을 -----</u></p> <p>-----.</p> <p>-----.</p> <p>8. (현행과 같음)</p> <p>제47조(<u>어항통합정보시스템</u>의 구축·운영) ① ----- <u>어항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어항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u>어항통합정보시스템</u>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u></p> <p>② ----- -<u>어항통합정보시스템</u>의 ----- ----- ----<u>어항통합정보시스템</u>을-----</p>

법에 따른 신고·승인·허가·교부·통지 등의 민원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 ----- ----- -----.
③ <u>어항운영전산망의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u>	③ <u>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u> ----- -----.